|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국제화물운수대리서비스 관련** **증치세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42호 재정부와의 협상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시범납세자가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화물운수대리서비스의 유관 증치세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시범납세자가 기타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위탁자를 위한 화물의 국제운수,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운송수단의 항구 진출, 항해/정박/하역의 연락 및 안배 등 화물 및 선박대리 유관 업무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철로운수 및 우편업을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통지>(재세[2013]106호) 첨부문건 3의 제1조 제14항 규정에 따라 증치세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2. 시범납세자가 상술한 국제화물운수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자에게서 수취한 모든 대리서비스 수입 및 기타 대리인에게 지불한 모든 대리비용은 반드시 금융기구를 통해 결산해야 한다. 3. 시범납세자가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간의 화물운수를 위해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화물운수대리서비스는 상술한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본 공고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2014년 7월 4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国际货物运输代理服务有关增值税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42号经商财政部同意，现将试点纳税人间接提供国际货物运输代理服务有关增值税问题公告如下：　　一、试点纳税人通过其他代理人，间接为委托人办理货物的国际运输、从事国际运输的运输工具进出港口、联系安排引航、靠泊、装卸等货物和船舶代理相关业务手续，可按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将铁路运输和邮政业纳入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2013〕106号）附件3第一条第（十四）项免征增值税。　　二、试点纳税人提供上述国际货物运输代理服务，向委托人收取的全部代理服务收入，以及向其他代理人支付的全部代理费用，必须通过金融机构进行结算。三、试点纳税人为大陆与香港、澳门、台湾地区之间的货物运输间接提供的货物运输代理服务，参照上述规定执行。　　本公告自2014年9月1日起施行。　　特此公告。国家税务总局2014年7月4日 |